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 경력인정, 실무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교육 계획수립 시기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함(안 제35조 개정)

-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부정청탁 금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제2호)

다. 시공능력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계산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계산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4 제3호나목)

라.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7) 신설)

마. 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소방학과의 학생에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8) 신설)

바.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의3
비고 제3호 및 별표 4의4 비고 제3호다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일간신문”을 각각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 위반사항란의 처목부터 로목까지를 커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	-------------	------

별표 4 제3호나목1) 중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를 “보유기술인력의 대상은 해당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3)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을 “한국화재보험협회, 「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목 5)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5)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감독한 경력은 제외한다)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교원(겸임교원은 제외한다)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생에게 소방시설과 관

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 · 학위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경력	1) 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 력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전문	○	○
			일반전기	×	○
			일반기계	○	×
		소방시설관리업		○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		○	○	

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감독한 경력은 제외한다)	○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교원(겸임교원은 제외한다)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생에게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별표 4의3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4의4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 있고,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점 및 감점”을 “가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아) 중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을 “이상”으로,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나목 중 “설계기간”을 “설계수행기간”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용역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수행 또는 계약기간”을 “설계수행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나목 중 “감리기간”을 “감리수행기간”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감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수행 또는 계약기간”을 “감리수행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4일에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대지면적 m ² ,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 건축면적 m ²			
	전체 소방시설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도급금액	도급형태	분리도급 [] 분리도급 예외 []	
	지급보증	계약이행미보증 [] 공사대금지급보증 [] 공사대금지급보증 예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 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도급구분	원도급 [] 하도급 []	착공일	완공예정일
	공사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시공 소방시설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	성명	수첩번호	분야/등급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시공사[]	정산금액	원	도급금액 원	
	종류			
설치되는 소방시설[]	성명	(수첩번호:)	(수첩번호:)	
	분야/등급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하는 곳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처리부서	착공(신고) 부서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1.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공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2호 및 제40조제1항 제1호	•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시공자 변경사항 신고시 '정산금액'은 변경 전 시공자가 관계인에 대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도급금액'은 변경 후 시공자가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검 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결 재 신고인	→	처리결과통보

[illegible]420mm×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u>11월 30일까지</u>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u>일간신문</u>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 --- <u>12월 31일</u> ----- ----- ----- --- <u>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u>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u>일간신문</u>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u>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u> ----- -----.